

TRADE & ORIGIN REPORT



03

ORIGIN ANALYSIS

- 1. 한–중 FTA 발효 10년의 성과와 과제**
- 2. 2025년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수출기업 영향 분석**
 - 기업 애로, 대응 전략, 정책 효율성을
중점으로**
- 3. 미국의 범위 판정 제도 현황 및
주요 사례**
 - 잔탄검을 중심으로**





한-중 FTA 발효 10년의 성과와 과제

오윤진
한국원산지정보원
연구기획실 활용연구팀
팀장

구지현
한국원산지정보원
연구기획실 활용연구팀
전문연구원

한-중 FTA는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과의 교역 관계를 제도적으로 구조화한 협정으로, 발효(2015. 12. 20.) 10년을 맞은 현재 그 성과와 과제가 교역 구조 변화 속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년은 대중 수출 비중의 완만한 조정과 대중 수입 의존 심화가 동시에 진행된 교역 구조 재편의 시기였으며, 동시에 수출·수입 모두에서 FTA 활용률이 80~90%대까지 정착된 제도 정착의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의 산업 고도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주요국 통상정책 변화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대중 교역은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기업 현장에서는 제도 활용의 효율성과 편의성 제고에 대한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한-중 FTA 정책은 단순한 활용률 제고를 넘어, 교역·공급망 구조의 전략적 관리, 산업·기업 규모별 맞춤형 활용 지원, 제도·인프라의 체계적 개선, 협상 고도화 및 다자 협정 연계를 중심으로 ‘활용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한–중 FTA는 단순히 하나의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우리나라 통상정책에서 중국이라는 핵심 파트너와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발효 10년을 맞은 시점에서 한–중 FTA를 평가하는 목적은 협정 체결 자체의 성과를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변화한 통상 환경 속에서 이 협정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를 점검하는 데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산업 구조 고도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환경·디지털 규범 강화 등 통상 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한–중 FTA를 ‘이미 체결된 협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해야 할 제도적 틀’로 재인식할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본 고는 한–중 FTA 발효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교역 구조 변화와 FTA 활용 현황을 분석하고, 기업의 체감 효과와 애로를 종합해 향후 정책적 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2. 한–중 FTA 발효 전후 교역 구조 변화

한–중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은 양적 확대와 함께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나타났다. 한국의 대중 수출은 절대 규모 기준으로는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대세계 수출 증가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에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진적으로 낮아졌다. 실제로 중국은 2020년대 내내 한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 지위를 유지했지만, 대중 수출 비중은 2020년 25.9%에서 2024년 19.5%로 완만하게 조정되었다.

연평균 기준으로 보면, FTA 발효 전(2006~2015년) 한국의 대중 수출은 1,143억 달러였고 중국을 제외한 대세계 수출은 3,568억 달러로 대중 수출 비중은 약 24.3%였다. FTA 발효 후(2016~2024년)에는 대중 수출이 1,418억 달러로 약 24.1% 증가했으나, 중국을 제외한 대세계 수출이 27.6% 증가하면서 중국의 상대적 비중은 23.8%로 소폭 하락했다. 이는 한–중 FTA가 대중 수출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출 구조가 전반적으로 다변화되는 흐름 속에서 중국의 비중을 확대시키는 효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반면 수입 측면에서는 변화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발효 전 한국의 대중국 수입은 연평균 744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14.6%를 차지했으나, 발효 후에는 1,204억 달러로 약 61.6% 증가하며 비중도 17.8%로 확대되었다. 이는 한국 제조업의 생산 과정에서 중국산 중간재·부품·소재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대중국 조달 구조가 구조적으로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단위: 억 달러)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가공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국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발효 전후 모두 약 4.4%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반면 중국의 대한국 수입은 절대 규모로는 증가했으나, 중국의 전체 수입 증가 속도에는 미치지 못해 비중이 9.9%에서 8.2%로 하락했다. 이는 중국의 수입선 다변화 전략과 산업 정책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종합하면, 한-중 FTA 발효 이후 10년은 대중 수출 비중의 점진적 조정과 대중 수입 확대가 병행되며 교역 구조가 재편된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한-중 FTA가 단순한 수출 확대 수단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산업 구조 조정 속에서 양국 간 교역의 방향과 성격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온 제도였음을 보여준다.



3. 한-중 FTA 발효 전후 산업별 교역 구조와 공급망 변화

한-중 FTA 발효 이후 대중 수출은 산업별로 상이한 변화 양상을 보였다. 화학공업제품과 전자전기제품 등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산업에서는 대중 수출이 증가하며, 한국이 중국 제조업의 생산 과정에서 중간재 공급국으로서 수행하는 역할이 강화되었다. 특히 중국 제조업의 고도화와 친환경·고부가가치 제품 수요 확대는 한국산 고기능 소재와 부품에 대한 수요를 일정 부분 유지·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섬유류나 일부 광산물 등 과거 가격 경쟁력을 중심으로 수출이 이루어졌던 품목에서는 대중 수출이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중국 내 생산능력 확대, 글로벌 생산기지 이동, 원가 구조 변화, 비관세장벽 강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대중 수출 전략이 단순 제품 공급에서 기능·품질·서비스가 결합된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표 7〉 한-중 FTA 발효 전후 한국의 산업별 대중국 수출 현황

(단위: 백만불, %)

산업군	주요 산업군 (2016~2024 수출금액 연평균 상위 산업군)	수출금액 평균		증감률	
		2006~2015 연평균	2016~2024 연평균	대중국	대세계 (중국 제외)
농림수산물	전체	822	1,640	99.4	59.1
	농산물	477	872	82.8	69.0
	수산물	260	558	114.6	36.2
광산물	전체	7,412	6,828	-7.9	16.2
	광물성연료	7,143	5,791	-18.9	17.6
	금속광물	186	896	381.3	1.2
화학공업제품	전체	21,385	30,198	41.2	70.6
	석유화학제품	17,729	18,959	6.9	36.3
	정밀화학제품	2,621	9,207	251.3	200.2
플라스틱·고무· 가죽제품	전체	2,287	3,074	34.4	34.3
	플라스틱제품	1,789	2,715	51.8	75.3
	고무제품	177	277	56.3	2.1
섬유류	전체	2,680	1,709	-36.2	-8.2
	직물	1,693	716	-57.7	-17.5
	섬유제품	491	614	25.3	11.3



산업군	주요 산업군 (2016~2024 수출금액 연평균 상위 산업군)	수출금액 평균		증감률	
		2006~2015 연평균	2016~2024 연평균	대중국	대세계 (총국 제외)
생활용품	전체	1,190	1,409	18.4	46.2
	생활용품	948	1,249	31.7	55.4
	기타 생활용품	242	160	-34.1	-7.7
철강금속제품	전체	7,340	8,061	9.8	21.8
	철강제품	4,328	4,215	-2.6	13.3
	비철금속제품	2,785	3,655	31.2	49.1
기계류	전체	17,997	18,561	3.1	13.6
	정밀기계	1,416	5,146	263.5	150.4
	기초산업기계	4,384	4,380	-0.1	39.3
전자전기제품	전체	53,116	70,214	32.2	37.4
	전자부품	37,507	55,480	47.9	92.4
	산업용전자제품	11,256	11,823	5.0	-16.4
잡제품	전체	64	118	84.8	106.2
	인쇄물	7	44	557.1	16.6
	의료위생용품	11	32	191.9	167.1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가공

수입 측면에서는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 기계류, 전자전기제품 등 다수 산업에서 대중국 수입이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대중국 중간재 수입 비중은 2015년 62.0%에서 2022년 67.5%까지 상승한 이후 2024년에는 64.6%를 기록하며, 중국 중심의 중간재 수입 구조가 상당 부분 고착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일부 자원·에너지 품목과 섬유류에서는 중국 외 국가로의 조달 다변화가 관측되나 전반적으로는 중국이 한국 제조업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8〉 한–중 FTA 발효 전후 한국의 산업별 대중국 수입 현황

(단위: 백만불, %)

산업군	주요 산업군 (2016~2024 수입금액 연평 균 상위 산업군)	수입금액 평균		증감률	
		2006~2015 연평균	2016~2024 연평균	대중국	대세계 (중국 제외)
농림수산물	전체	4,073	4,877	19.7	57.1
	농산물	2,329	2,933	25.9	43.0
	수산물	1,046	1,295	23.9	79.8
광산물	전체	3,037	2,037	-32.9	5.9
	비금속광물	1,019	1,083	6.3	18.1
	광물성연료	1,815	706	-61.1	3.1
화학공업제품	전체	7,236	16,991	134.8	16.4
	정밀화학제품	3,373	10,267	204.4	58.9
	석유화학제품	1,398	2,786	99.3	-16.4
플라스틱·고무· 가죽제품	전체	1,096	2,189	99.8	-2.3
	플라스틱제품	692	1,628	135.2	-2.2
	고무제품	292	463	58.4	58.8
섬유류	전체	5,564	6,933	24.6	97.3
	섬유제품	3,711	4,917	32.5	175.5
	직물	1,013	1,196	18.2	17.8
생활용품	전체	4,345	7,877	81.3	105.3
	생활용품	3,204	6,261	95.4	89.2
	기타 생활용품	1,141	1,617	41.7	191.6
철강금속제품	전체	12,604	12,525	-0.6	-14.0
	철강제품	10,458	9,356	-10.5	-33.5
	비철금속제품	1,940	2,667	37.4	12.3
기계류	전체	6,664	12,403	86.1	33.9
	수송기계	2,194	3,836	74.9	49.6
	기초산업기계	1,931	3,126	61.9	-4.9
전자전기제품	전체	29,709	54,230	82.5	41.9
	전자부품	12,595	27,211	116.0	35.9
	산업용전자제품	10,535	16,781	59.3	55.8
잡제품	전체	118	312	165.3	11.2
	의료위생용품	30	118	298.5	42.6
	기타잡제품	21	82	296.7	-45.8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가공



이러한 변화는 제조업 원가 절감과 조달 효율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한편, 특정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의존이 누적될 경우 공급망 취약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적 관리 필요성을 함께 제기한다.

즉 산업 구조상의 변화로 볼 때 한-중 FTA는 단순한 교역 확대를 넘어, 향후 공급망 안정성과 산업별 역할 분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4. 한-중 FTA 활용 현황 : 제도 정착의 10년

한-중 FTA는 상품 양허 측면에서 발효 이후 최대 20년 이내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 철폐를 목표로 설계되었다. 한국은 전체 품목의 약 92%를, 중국은 약 91%를 관세 철폐 대상에 포함했으며, 한국은 즉시 철폐 품목의 비중이 높은 반면 중국은 단계적 철폐 비중이 높은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양허 구조 속에서 FTA 활용은 빠르게 정착되었다. FTA 수출 활용률은 2016년 33.9%에서 2024년 83.1%로 크게 상승했으며, 화학공업제품과 전자전기제품 등 주요 산업에서는 활용률이 80~90%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기계류와 철강·금속제품 등 제조업 기반 산업의 활용률 또한 크게 개선되었다.

[산업별 한-중 FTA 수출 활용률]

(단위: %)

산업	한-중 FTA 활용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농림수산물	34.6	51.6	73.8	76.4	51.6	62.8	59.5	87.9	92.4
광산물	53.2	59.7	90.7	92.5	93.6	93.2	95.0	81.7	91.7
화학공업제품	49.1	58.2	60.1	62.4	69.5	72.5	75.7	86.5	91.1
플라스틱·고무· 가죽제품	26.2	53.1	57.7	58.1	62.8	64.1	62.1	73.5	73.0
섬유류	21.6	37.3	43.3	45.8	58.7	58.5	46.1	47.2	51.2
생활용품	17.4	40.0	43.3	44.5	50.0	51.8	38.0	47.3	55.6
철강금속제품	31.4	46.3	51.8	58.3	59.2	48.4	50.0	69.3	70.0
기계류	27.9	46.3	53.1	42.2	54.4	53.2	53.4	71.6	73.0

산업	한-중 FTA 활용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자전기제품	15.0	42.9	37.9	59.3	54.7	46.7	26.6	48.3	88.6
잡제품	9.0	17.7	19.3	27.1	17.0	9.2	10.7	63.8	75.3
합계	33.9	49.7	55.0	57.2	65.0	64.7	63.3	73.3	83.1

자료: 한국원산지정보원·관세청, FTA 활용지도

FTA 수입 활용률 역시 2016년 58.1%에서 2024년 92.0%로 크게 상승하여, 관세 혜택이 가능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FTA가 적극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중 FTA가 수입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비용 절감 수단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산업별 한-중 FTA 수입 활용률]

(단위: %)

산업	한-중 FTA 활용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농림수산물	54.4	68.5	74.3	77.4	78.8	81.1	80.7	84.0	84.7
광산물	40.8	53.1	57.0	54.6	68.1	62.1	87.5	69.5	83.8
화학공업제품	73.8	82.9	86.7	89.0	93.2	94.8	95.2	96.0	96.1
플라스틱·고무· 가죽제품	59.9	73.0	78.1	81.9	87.8	89.9	91.3	93.1	94.5
섬유류	60.0	71.6	75.8	80.5	85.2	86.2	84.9	87.5	89.5
생활용품	51.9	63.3	69.2	75.6	79.8	82.1	82.2	85.2	87.9
철강금속제품	64.1	69.0	72.9	78.6	89.7	91.9	91.8	91.2	93.3
기계류	49.9	60.6	68.9	76.6	85.2	85.5	86.4	88.3	90.1
전자전기제품	50.2	60.6	70.2	78.5	80.6	82.5	86.0	91.6	93.4
잡제품	40.8	62.6	64.0	75.8	86.5	95.2	94.7	88.8	86.7
합계	58.1	68.6	74.9	80.1	85.1	87.0	88.5	90.7	92.0

자료: 한국원산지정보원·관세청, FTA 활용지도

FTA 특혜대상 수출입 금액 비중의 변화 역시 교역 구조 재편과 연동되어 나타났다. 수출에서는 화학공업제품의 비중이 크게 확대된 반면, 일부 산업의 비중은 감소했고, 수입에서는 중간재·생활용품 중심으로 특혜대상 비중이 확대되었다. 이는 한-중 FTA가 단순히 관세율을 낮춘 제도가 아니라, 실제 수출입 구조의 재편에 영향을 미친 제도였음을 의미한다.



[한-중 FTA 산업별 특혜 대상 수출입 금액 비중]

(단위: %, %p)

MTI 1단위	수출			수입		
	2016	2024	비중 변화 대상금액 비중	2016	2024	비중 변화
	대상금액 비중	대상금액 비중		대상금액 비중	대상금액 비중	
농림수산물	1.1	1.8	0.7	7.5	5.2	-2.3
광산물	4.6	3.1	-1.5	2.0	1.2	-0.8
화학공업제품	32.5	44.4	11.9	22.4	23.7	1.3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	4.9	6.3	1.4	4.1	3.7	-0.4
섬유류	4.3	3.0	-1.3	10.6	8.8	-1.8
생활용품	0.5	1.9	1.4	5.7	10.1	4.4
철강금속제품	11.0	10.9	-0.1	7.4	7.8	0.4
기계류	24.8	12.7	-12.1	15.2	18.3	3.1
전자전기제품	16.2	15.8	-0.4	24.4	21.1	-3.3
잡제품	0.2	0.1	-0.1	0.7	0.1	-0.6
총합계	100	100		100	100	

자료: 한국원산지정보원·관세청, FTA 활용지도

5. 기업의 FTA 활용 실태와 향후 과제

본 장에서는 한-중 FTA를 활용하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이 체감하는 한-중 FTA의 효과를 살펴보고, 제도·정책에 대한 인식을 통해 향후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설문조사는 6월 16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되었으며, 총 120개 기업이 응답하였다.

- 조사 기간: 2025년 6월 16일 ~ 6월 30일
- 조사모집단: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 2024년 수출기업

* 제외 사항: 비영리 기업, FTA 비대상품목 수출기업, FTA 미활용기업, FTA 활용 대표 품목의 대상금액 십만불 이하 기업

- 전체 응답기업 수: 총 120개 수출기업

대중 수출기업들은 FTA 활용을 통해 관세 절감 효과(52.5%)를 가장 크게 체감했으며, 그 다음으로 바이어 요구 충족(45.8%)과 통관 간소화·우대(29.2%)를 주요 효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바이어 요구 충족]이 전체 수출기업 평균(41.2%)보다 대중 수출기업(45.8%)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 수입업체들이 한-중 FTA 특혜관세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이 이에 대응하여 FTA를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체 수출기업과 한-중 FTA 활용기업의 'FTA 활용 효과' 조사 결과]

Q. FTA 활용을 통해 체감한 주요 효과는 무엇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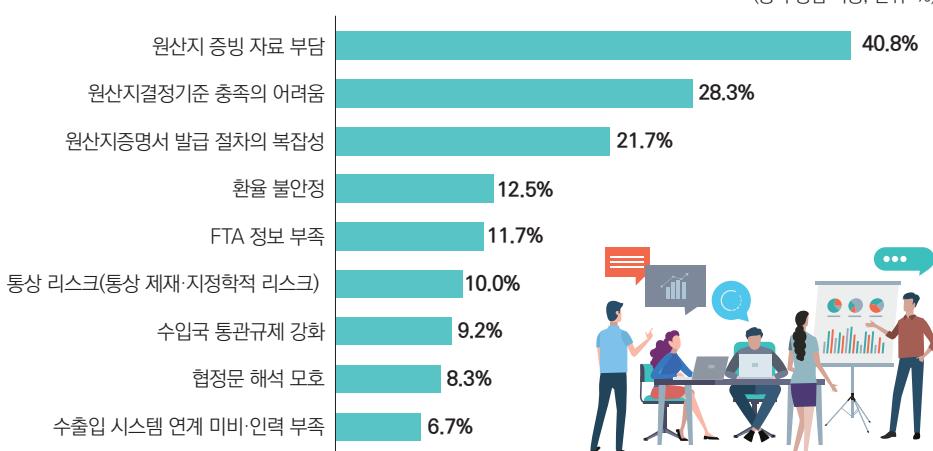
구분	관세 절감	바이어 요구 충족	수입국 통관 간소화·우대	가격 경쟁력 향상	신규 시장 개척
대중 수출기업	52.5	45.8	29.2	23.3	7.5
수출기업 전체	50.1	41.2	27.1	22.8	5.3
비중 차이	2.4	4.6	2.1	0.5	2.2

그러나 동시에 원산지 증빙자료 준비 부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의 어려움,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의 복잡성 등 활용 비용과 관련된 애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활용률이 높아질수록 제도 운영의 세부 부담이 기업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단순 홍보 중심의 지원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중 FTA 활용기업의 산업별 'FTA 활용 애로사항' 조사 결과]

Q. FTA 활용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의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단위: %)





발효 10년을 종합해 보면, 한-중 FTA는 교역 구조 재편과 제도 정착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교역·공급망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에는 보다 정교한 정책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우선 대중 교역을 단순히 축소하기보다, 핵심 품목과 산업의 과도한 중국 의존을 진단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 배터리, 반도체 소재, 기초화학, 핵심 광물 등 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대체 조달, 국내 생산 역량 강화, 우회 공급망 구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별·기업 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FTA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 고활용·고성장 산업의 경우 FTA를 장기 공급계약, 가치사슬 고도화, 친환경·디지털 전환과 연계하여 구조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반면 저활용·저성장 산업은 활용 비용을 완화하고 방어적 활용 전략을 병행함으로써 수익성 유지와 단계적 구조 전환을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실무형 FTA 활용 가이드 제공, 디지털 원산지 관리 시스템 확산, 교육·컨설팅 강화 등 제도·인프라의 체계적 개선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한-중 FTA 활용기업의 'FTA 활용 제고를 위한 필요 지원사항' 조사 결과]

Q.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중복 응답 가능, 단위: %)

구분	FTA 활용가이드 제공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FTA 관련 교육	FTA 전문가 컨설팅	업종별 실무자 간담회 개최
대중 수출기업	32.5	23.3	26.7	5.8	8.3

나아가 서비스·투자·디지털·환경 등 신통상 이슈를 포함하는 한-중 FTA 고도화와 RCEP 등 다자·복수국간 협정과의 연계는 향후 10년 한-중 FTA의 실효성을 좌우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발효 10년을 맞은 지금은, 한-중 FTA를 '얼마나 활용되었는가'의 관점을 넘어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가'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2025년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수출기업 영향 분석

- 기업 애로, 대응 전략, 정책 효율성을 중점으로



박현혁
한국원산지정보원 신통상규제팀 전문연구원

1. 들어가며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국가·품목별 고율 관세 부과, 원산지 규제 강화 등 전반적으로 관세 중심의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 역시 가시화되고 있으며, 수출 물량 감소, 시장 경쟁력 약화 등 단기 충격과 중·장기적 비용 부담을 동시에 겪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국원산지정보원은 이러한 변화가 실제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기 위해 2025년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미 관세 조치에 따른 수출기업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 기업은 총 331개로, 전기·전자 및 반도체(16%),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13%), 기계·산업 설비(12%) 등 주요 산업군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규모 역시 대기업(23%),



중견기업(38%), 중소기업(39%)으로 고르게 분포하였다.

본고에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5년 하반기 기준 미국 관세정책이 우리 수출기업에 미친 영향과 주요 애로, 대응 전략, 그리고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2. 미 수출기업의 애로와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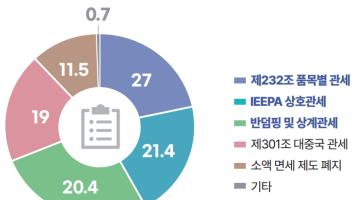
■ 국적 불문 확대되는 제232조 관세: 기업 불확실성의 핵심

하반기 현재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관세정책은 제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27%)로 나타났다. IEEPA 기반 관세에 대한 美 대법원 판결의 불확실성 및 트럼프 1기부터 지속되온 중국산 물품의 글로벌 공급망 배제 정책으로 상호관세(21.4%), 제301조(19%) 등의 관세정책에 대한 우려 응답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사료되나, 제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적용 대상 품목과 범위가 국적과 관계없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기업 부담으로 직결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관세정책 중 가장 우려되는 정책은?

품목별 관세부과 우려 가장 높음. 대미 주력 수출 산업인 자동차, 철강 등이 이에 해당되기 때문

(단위:비율)



답변	비율 (%)
제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27
IEEPA 상호관세	21.4
반덤핑 및 상계관세	20.4
제301조에 따른 대중국 관세	19
소액 면세 제도 폐지	11.5
기타	0.7
합계	100



■ 미 수출기업 10곳 중 6곳 수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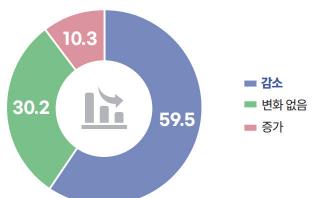
미국향 수출 물량은 조사 기업의 59.5%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 이상 감소한 기업이 18.4%에 달해 관세정책의 실질적 부담이 수출 규모 축소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출 감소는 주로 기계·산업설비, 전기·전자 및 반도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비철금속 및 알루미늄 제품 산업군에서 집중되었다. 이들 산업은 특히 제232조에 따른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공급망 전 과정에서 중국 등 규제 민감 국가산 부품 의존도가 높아 정책 변화에 특히 취약한 구조를 갖는 것으로 보여진다.

전년 동기 대비 수출 물량 감소 영향은?

수출 물량 감소 약 60%, 변화 없음 30%, 증가 10%로 나타나 부정적 영향 큼

(단위:비율)



수출 물량 변화	비율 (%)
10% 미만 감소	24.8
20% 이상 감소	18.4
10% 이상 20% 미만 감소	16.3
변화 없음	30.2
증가	10.3
합계	100

■ 수출 물량 감소: 관세 부담 전가, 통관·물류 리스크 등 복합적 애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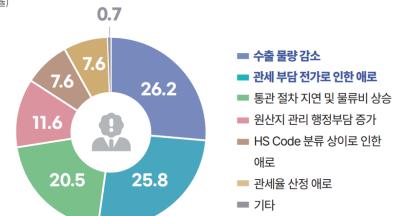
전체 응답 기업 중 60% 가량에서 미국향 수출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미 관세조치에 따른 1순위 애로사항은 수출 물량 감소(26.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관세 부담 전가로 인한 애로(25.8%), 통관 절차 지연 및 물류비 상승(20.5%)에 대한 애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해야 할 점은 실제 수출 현장에서는 여러 요소가 단일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얹혀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관찰되는 수출 물량 감소는 단순한 물적 감소가 아니라 통관 지연에 따른 납기 불확실성 확대, 물류비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 원산지·품목분류 오류 가능성의 확대 등 비용, 시간, 규제 리스크가 동시에 결합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주요 애로사항은?

수출 물량 감소 및 관세 부담 전가로 호소기업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비율)



답변	비율 (%)
수출 물량 감소	26.2
관세 부담 전가로 인한 애로	25.8
통관 절차 지연 및 물류비 상승	20.5
원산지 관리 행정부담 증가	11.6
HS Code 분류 상이로 인한 애로	7.6
관세율 산정 애로	7.6
기타	0.7
합계	100



3. 주요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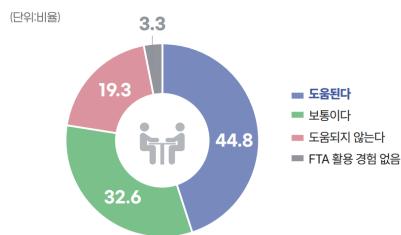
■ FTA 경험 보유 기업, 관세정책에 비교적 안정적 대응

FTA 활용 경험이 미 관세정책 대응에 도움이 되었는지 조사한 결과, 기업의 44.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FTA 활용을 위해 구축한 원산지 증빙 체계, 관세사 협업 경험, 계약 조건 설계 경험이 최근 강화되고 있는 원산지 관련 이슈 대응에 실질적 기반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FTA 활용 여부가 단순한 특혜세율 적용을 넘어, 기업의 원산지 관리 역량 자체를 구조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실제로 기업의 원산지 관리 역량은 최근 미국 정책 환경에서 핵심 경쟁 요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FTA 활용이 미국 관세정책 대응에 도움되나?

도움된다 응답 44.8%, 도움되지 않는다 19.3%



답변	비율(%)
매우 그렇다	12.5
대체로 그렇다	32.3
보통이다	32.6
별로 그렇지 않다	15.7
전혀 그렇지 않다	3.6
FTA 활용 경험 없음	3.3
합계	100

■ 미국발 리스크 현실화에 기업은 다층적 대응 전략 가동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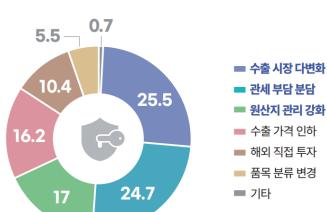
관세 및 공급망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전략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활용 가능한 기업의 대응 전략 중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전략은 수출시장 다변화(25.5%)였다. 미국 시장 중심의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리스크를 분산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화된

미국 관세정책 강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은?

1위 수출시장 다변화, 2위 관세 부담 분담, 3위 원산지 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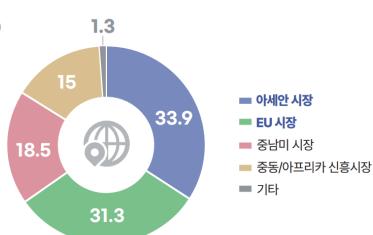
(단위:비율)



수출시장 다변화 선호 지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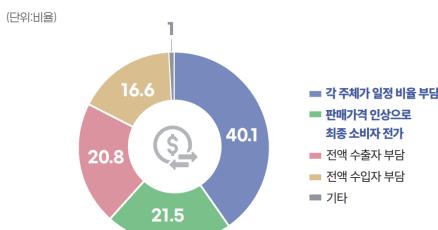
1순위 대체 시장은 아세안과 EU 시장 중심, 후순위 대체 시장은 중남미와 중동/아프리카 시장 선호

(단위: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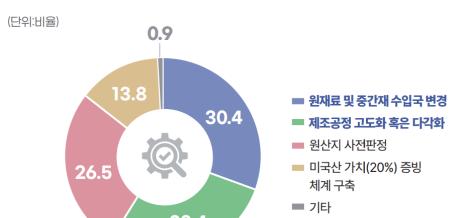
미국의 관세 부담 분담 선호 방법은?

거래 주체별 협의하여 일정 비율 분담을 가장 선호, 소비재 상품은 판매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 전가 방법을 선택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전략은?

원재료 공급망 변경 또는 제조공정 다각화를 통한 한국산 판정 전략을 가장 선호, 원산지 사전판정을 통한 원산지 리스크 예방 전략도 선호



것이다. 다변화 대상 지역으로는 아세안(33.9%)과 EU(31.3%)가 가장 많은 응답을 기록했다. 두 지역은 상대적으로 규제 변동성이 낮고, 현지 수요 기반이 탄탄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시장 진출에는 현지 인증·규제 대응, 유통망 확보, 마케팅 비용 부담 등 실무적 어려움이 있어, 실질적인 진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정보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 대응 전략은 관세 부담을 분담(24.7%)하는 것이다. 기업들은 공급자·수출자·수입자 등 각 거래 주체별 공동 부담 방식(40.1%)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관세 부담을 전액 수입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16.6%에 그쳐 바이어 중심의 협상 구조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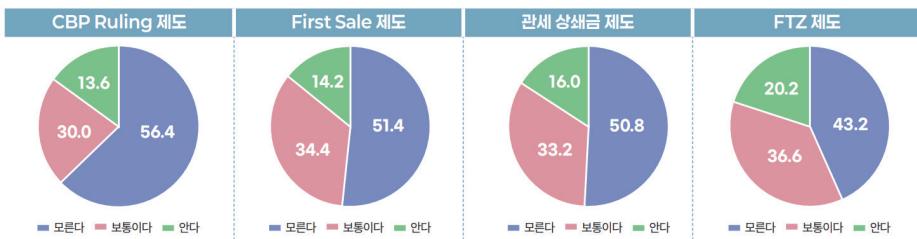
세 번째 대응 전략은 원산지 관리 강화(17%)다.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한 구체적 선호 방안으로는 원재료 및 중간재 조달처 변경(30.4%), 제조공정 고도화 및 다각화(28.4%), 원산지 사전판정 활용(26.5%) 등이 주요 전략으로 나타났다. 원재료 및 중간재 조달처를 변경이 1위를 기록한 것은 최근 미국 내 노동·인권 규제 강화, 중국산 원재료에 대한 제재 지속, 국가별 고율 관세 적용 등으로 인해 특정 국가산 원·부자재 사용을 지양하는 경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4. 제도 인식 수준

기업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미국 특 제도에 대한 이해 낮은 편, 상대국의 활용가능한 제도 정보 제공 필요



미국의 관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에 대한 국내 기업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원산지·품목분류·과세가격 등에 대한 사전 유권해석을 제공하는 CBP Ruling 제도는 응답 기업의 56.4%가 ‘모른다’고 답했으며, First Sale 제도 또한 과반인 51.4%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232조 품목별 관세에 따라 자동차 부품에 적용되는 관세를 일부 상쇄할 수 있는 관세 상쇄금 제도(모른다 50.8%), 미국의 관세 유예·면제 구역인 FTZ 제도(모른다 43.2%) 역시 활용 가능성에 비해 인식률이 낮았다.

이는 우리 기업이 미국의 관세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에도,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실제 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공급망·원산지 리스크 대응이 강조되는 시기에 사전판정 제도나 First Sale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기업의 관세 리스크를 줄이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에도, 절반 이상이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는 상황은 대응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 부족이 단순한 절차 이해 부족을 넘어 관세 부담의 지속적 증가, 원산지·품목분류 오류 리스크 확대, 수입자 중심의 협상 구조 고착 등으로 이어지며, 우리 기업의 중장기적 부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업 규모에 따라 정보 비대칭성이 심화될 경우, 제도 활용에 대한 역량 격차가 고착되어 중소기업의 대응 능력 구축이 구조적으로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변화하는 관세 환경에 대한 기본 안내를 넘어, 미국 내 활용 가능한 제도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정보 제공과 실무 중심의 활용 역량 강화 지원에 나서야 한다. 우리 기업의 경우 미 관세 조치에 대한 인식 자체는 높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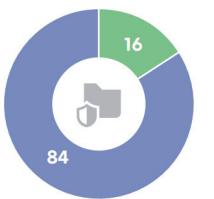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상대국 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은 만큼 공공영역에서의 적극적인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5. 정책 지원 경험

미국 관세조치와 관련한 정책 지원 경험은?

직접적 지원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84%로 높음, 정부 지원 사업의 인식 개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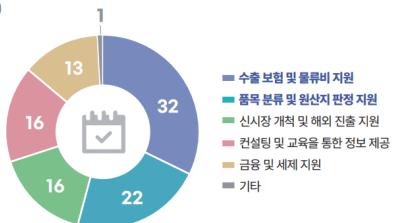
(단위: 비율)



선호 정책의 형태는?

기업들이 선호하는 정책은 수출보험 및 물류비 지원이 1순위,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판정 및 품목분류 판정 지원이 2순위에 해당

(단위: 비율)



미 관세정책에 대한 정책 지원 경험에 대한 응답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응답 기업의 84%가 관련 정부 지원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기업도 대부분 단발적 또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수출 현장에서는 여러 지원 항목이 있음에도 실제 지원이 현장의 수요와 충분히 맞물려 있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원을 받은 기업의 주요 수혜 항목은 수출보험·물류비 지원(32%), 품목분류·원산지 판정 지원(22%), 신시장 개척 및 해외 진출 지원(16%)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의 효율성

답변	기업 수	비율 (%)
매우 그렇다	14	4.2
대체로 그렇다	66	20
보통이다	124	37.5
별로 그렇지 않다	74	22.4
전혀 그럴지 않다	30	9.1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모른다	23	6.9
합계	331	100

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에서도 ‘효과적이다’는 응답이 24.2%에 그친 반면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31.5%로 더 높았으며, ‘지원제도가 있는지 모른다’는 응답이 6.9%로 나타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인지도·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 규제·제도 정보를 수집할 전담 인력의 부족, 원산지·품목분류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영어 기반 정책 문서 해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정책 지원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기업 규모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형태로 설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나가며

이번 조사 결과는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가 단순한 비용 증가를 넘어 우리 기업의 수출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이 수출 물량 감소를 경험하였고, 제232조 중심의 고율 관세가 확대되면서 산업별 리스크가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기계, 전자, 자동차, 철강 등 국내 주력 산업에서 수출 감소가 집중된 점은 향후에도 관세정책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기업들은 대응 전략으로 시장 다변화와 관세 부담 분담, 원산지 관리 강화를 선택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지 인증·규제 대응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공급망 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 제도 활용 역량 강화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CBP Ruling, First Sale 등 미국의 관세 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은 장기적 대응의 취약 지점을 보여주는 만큼, 제도 교육 프로그램 확대, 실무 중심 가이드라인 제공 등이 필요하다.

정부 정책 지원 측면에서는 지원에 대한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이고,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비용 절감·리스크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미국의 관세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낮고 구조적으로 복잡하여 우리 수출기업에 수많은 애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변화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대응 체계 강화와 더불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보다 정교하고 현장 중심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가 이러한 지원체계 고도화의 기반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미국의 범위판정 제도 현황 및 주요 사례

-잔탄검을 중심으로



김세라
한국원산지정보원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1. 들어가며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의 범위판정(Scope Ruling) 제도는 특정 제품이 기준에 발효된 반덤핑(AD) 또는 상계관세(CVD) 명령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상무부가 공식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에는 관세 부과 대상 제품의 범위(scope)가 명확히 서면으로 설명되어 있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제품 설명의 모호성, 새로운 형태의 가공·결합 제품 등장 등으로 인해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연방규정집 19 CFR §351.225에 규정된 범위판정 절차를 활용하면 특정 제품이 명령문의 적용 대상인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상무부는 ‘범위판정 신청 가이드¹⁾’와 ‘표준 신청서²⁾’를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 1) 범위판정 신청 가이드(Scope Ruling Application Guidance)
- 2) 범위판정 신청서(Scope Ruling Application)



본 고에서는 미국 상무부가 운영하는 범위판정 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범위판정에서 적용되는 판단 논리를 살펴보자 한다.

2. 미국 범위판정 신청 절차

1) 개요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에는 일반적으로 조사 대상 제품을 설명하는 서면 설명, 즉 범위가 포함되어 있다. 서면 설명은 명령의 범위를 정의하며, 서면 설명에 포함되는 제품은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세율이 적용된다. 범위에는 (1)조사 대상 제품에 대한 설명과 (2)해당 제품이 분류되는 미국 HS코드(HTSUS)의 소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HS코드는 참고용으로만 사용되며 실제 판단에서는 서면 설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범위판정과 관련한 세부 절차는 19 CFR 351.225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규정은 2021년 9월 20일 대폭 개정되었다.³⁾

상무부의 범위판정 결과는 상무부 전자기록시스템인 반덤핑·상계관세 중앙전자송달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⁴⁾

2) 신청 절차

상무부는 제출된 범위판정 신청서가 요건과 서식을 모두 제대로 갖췄는지 검토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영어 외의 언어로 작성된 문서는 모두 영어 번역본과 원문의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번역이 불완전하거나 제출 문서가 미비한 경우 신청서를 요건 미비로 간주해 기각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은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해 언제든지 다시 신청서를 재제출할 수 있다.

-
- 3) 반덤핑·상계관세법 행정·집행 개선을 위한 규정(Regulations to Improve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Laws), 86 FR 52300(2021년 9월 20일) 참조.
 - 4) 2011년 8월 5일 이후 내려진 범위판정 결정문은 상무부의 전자기록시스템인 반덤핑·상계관세 중앙전자송달 시스템(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Centralized Electronic Service System, ACCESS)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신청서가 수용되고 범위조사가 개시되면 상무부는 필요 시 서면질의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 검증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3) 신청서의 구성

범위판정 신청서는 상무부가 제시한 표준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서식 요건과 각 항목별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상무부는 형식 요건을 엄격하게 검토하므로, 신청서는 규정된 서식과 작성 기준을 정확히 준수하여 작성해야 한다.



신청서는 크게 표지, 본문 신청서, 부록으로 구성되며, 본문 신청서는 제I절부터 제V절까지 총 5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각 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위판정 신청서 구성]

구분		주요 내용
제I절	일반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 목적, 첨부 문서 목록, 제출 규정 준수 확인 등 내용 기재
제II절	제품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세 가지 정보를 기재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개) 연방 관보 고시를 위한 정보로, 제품의 설명 정보(물리적 특성, 생산국·수출국·(수입된 경우) 원산지, HS code(HTSUS), 용도 등)를 포함 (2) (비공개) 영업비밀을 포함한 상세 제품 정보(생산 이력, 생산량, 생산공정, 부품·재료 등)를 제공 (3) 법적 범위 진술(범위 해당 여부)
제III절	원산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 판정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재료와 완제품의 동일성, 물리적 특성 변화, 용도, 생산비용·부가가치, 제3국 생산공정, 투자 수준 등
제IV절	제품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제품이 미국 관세영역으로 소비용 수입되었는지 여부를 명시(신청서 제출일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된 경우·수입되지 않은 경우 각각 기재
제V절	범위판정 신청자(또는 대리인)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위판정 신청자(또는 대리인)에 관한 기본 정보와 신청자의 지위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사항 기재
부록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위판정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완전하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누락된 문서와 그 사유, 그리고 해당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신청자가 취한 조치를 설명
부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위판정 신청 과정에서 제출된 사실관계 정보의 정확성을 인증하고, 제출물의 적법한 송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또한 제II절부터 제IV절까지는 해당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된다. 증빙서류가 제출이 필요한 항목은 신청서 양식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상무부가 인정하는 문서 유형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제출 가능한 자료의 예시로는 사진, 사양서, 마케팅 자료, 거래자료(송장과 계약서를 비롯해 해당 수입 제품의 판매·구매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반영하는 기타 관련 상업 문서)를 포함하여, 제품의 생산·판매·구매와 관련된 각종 문서 전반을 포괄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특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모든 문서는 명확하고 판독 가능한 형태로 제출되어야 한다. 만약 관련 문서를 모두 제출하기 어렵거나, 요구된 문서의 완전한 판독이 가능한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록 A를 통해 해당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제출이 불가능한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부록 B에서는 범위판정 신청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 및 사실 관계 내용의 정확성을 인증하고, 신청서 및 관련 문서가 상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확인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3. 범위 판단 기준

1) 1단계 : 서면 설명 및 1·2차 자료 검토

상무부는 범위판정에 있어 단계적 접근 방식을 적용하며 범위의 서면 설명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품이 서면 설명만으로 범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상무부는 추가적인 검토 없이 이를 근거로 최종 판정을 내릴수 있다.

그러나 서면 설명으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19 CFR 351.225(k)(1)(i)에 규정된 1차 및 2차 자료를 추가로 검토하여 필요 시 최종 판단을 내린다.

[범위판정 관련 1·2차 참고자료]

구분	주요 내용
1차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해당 명령과 관련된 ▲정원서의 제품 설명, ▲초기 조사에 포함된 제품 설명, ▲상무부의 과거 또는 최근 결정(해당 명령 및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면 설명을 가진 다른 명령들의 선행 판정 등),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초기 조사 보고서 및 해당 명령 관련 ITC 결정 사항 등
2차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상기 언급한 자료 이외 상무부 또는 ITC의 결정 사항 및 CBP 판정 사항 등

다만 2차 해석 자료가 1차 해석 자료와 상충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차 해석 자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해당 제품의 명령 범위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2) 2단계 : 추가 고려요소(5가지)

상기 언급한 방법으로 범위판정이 불분명한 경우 상무부는 다음의 5가지 요소를 추가로 고려한다. ▲제품의 물리적 특성(화학적·치수적·기술적 특성 포함), ▲최종사용자의 기대, ▲제품의 최종 용도, ▲제품이 판매되는 거래(유통)경로, ▲제품이 광고되고 전시되는 방식. 이 중 다른 요소들보다 물리적 특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

또한 신청 제품이 여러 구성품으로 이루어지거나, 물품이 전체 제품의 구성품인 경우 상무부는 추가 분석⁵⁾을 실시할 수 있다.

3) 원산지 판정

상무부는 범위판정 과정에서 필요 시 제3국 가공 제품에 대해 별도의 원산지 판정을 수행할 수 있다. 이때 상무부는 ▲최종 완제품이 투입된 원재료 제품과 다른 품목 또는 종류의 동일성 여부, ▲제품의 물리적 특성(화학적, 치수적, 기술적 특성 포함), ▲최종 완제품의 용도를 검토한다. 또한 제3국에서의 추가 가공으로 발생한 ▲생산비용 또는 부가가치, 해당 ▲가공 공정의 복잡성, 그리고 ▲투자 수준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로 포함된다.

[범위판정 시 원산지 판단기준(19 CFR 351.225(j))]

- 최종 완제품이 투입된 원재료 제품과 다른 품목 또는 다른 종류의 상품인지
- 제품의 물리적 특성(화학적, 치수적, 기술적 특성 포함)
- 최종 완제품의 의도된 최종 용도
- 제3국에서의 추가 가공으로 인한 생산비용 또는 부가가치
- 제3국에서의 가공 공정 특성(복잡성)
- 제3국에서의 투자 수준
- 또한 상무부는 원산지 결정 시 제품의 필수 구성요소가 생산된 장소 또는 제품의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istics)이 부여된 장소를 고려 → 판정 기준의 핵심임

5) 19 CFR 351.225(k)(3)



상무부는 상기 언급된 요건들을 검토하는 것 외에도, 제품의 핵심 부품이 생산된 장소 또는 제품의 본질적 특성이 형성된 장소를 가장 중요한 원산지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또한 범위판정 원산지 판정 시 19 CFR 351.225에 따라 미국 CBP 등 다른 기관 결정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 권한으로 판정한다.

4. 미국 상무부의 GPI社 잔탄검 범위판정 사례

상무부는 해당 제품의 반덤핑 명령의 적용 범위를 판정하기 위해 19 CFR §351.225에 따라 두 단계로 분석을 진행했다. 첫 번째 단계인 기존 명령 범위 해석(§351.225(k) (1))에서는 명령의 서면 설명, 초기 조사 기록, 과거 범위판정 자료 등을 검토하여 해당 제품이 기존 반덤핑 명령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했다. 두 번째 단계인 원산지 판정(§351.225(j))에서는 생산공정의 특성, 생산비용 및 부가가치, 제품의 용도, 투자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산지를 판정했다. 아래는 해당 제품에 대한 상무부 범위판정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범위판정 신청 배경 및 요약

캐나다 소재 Gum Products International(GPI)는 중국산 잔탄검⁶⁾을 원료로 가공한 자사 식품 원료 제품(PureXan 80AN, PureXan 200AN, Quickxan 70)이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명령 범위에서 제외되고 캐나다산으로 확인될 것을 요청하며 범위판정(scope ruling) 신청서를 제출했다.

GPI는 해당 제품들이 중국산 잔탄검을 원료로 자체 개발한 공정으로 잔탄 내 아밀레이스 효소를 제거·비활성화하여 원료의 기능을 변형한 새로운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GPI는 이러한 아밀레이스 비활성화 및 맞춤형 조제 공정이 실질적 변형에

6) A-570-985

해당하므로, 완제품은 캐나다산 신규 제품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중국산 잔탄검에 대한 AD 명령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해당 공정을 수행(아밀레이스 효소를 제거·비활성화)해도 제품이 명령 대상인 잔탄검의 화학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의 가공이 상무부가 범위판정 시 실시하는 원산지 판단 기준(물리적 특성, 투자 수준, 용도, 공정의 복잡성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생산공정이 원산지를 바꿀 만큼 충분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제품의 원산지가 여전히 중국임을 확정하고 반덤핑 명령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대상 제품의 화학적 정의 (A-570-985)]

잔탄검은 잔토모나스 캄페스트리스의 호기성 발효를 통해 생성되는 다당류다. 이 반복성 5당류 단량체 단위의 화학적 구조를 이루는 중추는 P-1,4-D-포도당 단당류 단위 2개인데, 이 중 두 번째 단위의 3당류 측쇄가 P-D-만노스-(1,4)-P-D-글루코론산-(1,2)-a-D-만노스 단당류 단위들로 구성되어 있다. 말단의 만노스는 피루빌화할 수 있고 내부의 만노스 단위는 아세틸화할 수 있다.

2) 미국의 대중 잔탄검 명령의 범위(서면 설명)

상무부는 중국산 잔탄검(Xanthan Gum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 대한 반덤핑 명령의 범위를 서면으로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반덤핑 명령의 해당하는 제품들은 다른 제품의 피복(coated)되거나 혼합(blended) 여부와 무관한 건성 잔탄검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본 명령에 포함된 잔탄검의 물리적 형태는 용액, 슬러리, 입자 크기와 무관한 건성 분말, 비연삭 섬유 등에 해당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다른 제품과 혼합된 잔탄검은 혼합의 결과물에 함유된 잔탄검이 건조중량 기준 15% 이상인 경우 상기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잔탄검과의 혼합이 가능한 기타 제품으로는 설탕, 무기물, 소금 등이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잔탄검은 잔토모나스 캄페스트리스의 호기성





발효를 통해 생성되는 다당류다. 이 반복성 5당류 단량체 단위의 화학적 구조를 이루는 중주는 P-1,4-D-포도당 단당류 단위 2개인데, 이 중 두 번째 단위의 3당류 측쇄가 P-D-만노스-(1,4)- P-D-글루쿠론산-(1,2)-a-D-만노스 단당류 단위들로 구성되어 있다. 말단의 만노스는 피루빌화할 수 있고 내부의 만노스 단위는 아세틸화할 수 있다.

동 명령의 대상 범위에 포함된 상품은 미국 HS 코드(HTSUS)의 제3913.90.20호, 제3913.90.2015호, 제3824.99.4900호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HS 코드(HTSUS) 분류는 행정적 편의를 위한 것일 뿐, 대상 범위에 대한 서면 설명이 결정적임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3) 상무부의 판단

(1) 제품 등급/종류의 동일성 여부

GPI(Gum Products International, Inc.)는 자사 제품이 단순히 잔탄검이 아니라 여러 원료가 결합된 가공품이며 중국산 잔탄검과는 다른 등급 및 용도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잔탄검 생산 과정에서 잔토모나스 세균이 생성하는 아밀레이스는 내열성이 강하여 상업용 잔탄검에 잔여물로 남을 수 있으며. 이러한 잔여 아밀레이스는 식품 내 전분을 분해하여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GPI는 아밀레이스 잔여물을 비활성화하는 공정을 개발하였으며, 자사 제품이 일반 잔탄검의 HS 코드(HTSUS, 제3913.90.2015호)가 아닌 식품 조제품(제2106.90.9898호), 소스 조제품(제2103.90.9091호), 또는 수프 조제품(제2104.10.0020호) 등으로 분류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무부는 원료 잔탄검과 GPI 제품 모두 명령 대상 범위에 명확하게 기술된 화학적 구조(5당 다당류)에 해당하므로, 이 제품들의 등급이나 종류가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상무부는 GPI가 캐나다에서 수행한 공정이 원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최종 제품이 여전히 중국산 잔탄검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등급과 종류의 제품이라고 보았다. 또한, 상무부는 명령 대상 범위에서 관세 분류(HS 코드)가 편의 제공 및 통관을 위한 참고용에 불과하며, 서면 설명이 결정적 판단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GPI의 HS 코드 분류 주장이 범위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상무부는 GPI 제품들이 특정 용도에 맞게 “배합·혼합 가공품”이라고 주장하지만, 기존 명령 범위(서면 설명)에 이미 “설탕·무기물·소금 등과의 혼합 가공품(잔탄검 건조중량

기준 15% 이상)"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GPI는 자사 제품의 잔탄검 함량이 명령 대상 제외 기준인 건조중량 15% 미만임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상무부는 "혼합 결과물에 함유된 잔탄검이 건조중량 기준 15% 이상인 경우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명시된 점을 강조했다.

(2) 물리적 특성

GPI는 혼합 및 가공을 통해 물리적 구조와 제품 형태가 달라졌다고 주장했으며, 아밀레이스 효소를 완전히 비활성화하는 공정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무부는 GPI가 화학적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상무부는 GPI의 아밀레이스 비활성화 공정 등 물리적·기능적 변화 주장을 경미 수준으로 판단했으며, 효소 유무는 범위 문언상 결정 요소가 아니라고 보았다. 상무부는 또한 범위 문언이 제품의 물리적 형태 변화가 아닌 잔탄검의 화학적 구조를 중심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명령의 대상 범위는 다른 제품과의 혼합 여부와 관계없이 잔탄검 자체를 포괄적으로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상무부는 미국의 다른 잔탄검 생산업체가 1994년부터 아밀레이스 특성을 명시한 사양의 잔탄검 제품을 판매해왔다는 점을 제시하며, GPI의 '독점 기술' 주장을 반박했다.

(3) 최종용도

GPI는 자사 제품(Purexan 80AN, 200AN, Quickxan 70)이 특정 고객의 최종 용도에 맞게 아밀레이스 비활성화 공정을 거쳐 제조되었으므로 일반 잔탄검과 동일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GPI는 초기 반덤핑 명령 조사 당시 ITC 산업 피해 보고서에 자사 제품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명령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GPI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TMB 440AE, Inc. v. United States(2020) 판례를 인용했다.

상무부는 GPI 제품이 식품·음료 분야에서 잔탄검으로 사용·표기되며, ITC가 검토한 '식품 및 음료 등급' 잔탄검과 용도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GPI의 주장을 기각했다.

(4) 생산원가 및 부가가치 분석

GPI는 자사 제품들이 고객 맞춤형으로 제조되어 잔탄검 함량이 제품마다 다르므로 평균값



산출은 의미가 없으며, 과거 판례⁷⁾에서 생산 원가 및 부가가치 비율이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인용했다.

상무부는 GPI 측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며, 최종 제품의 생산 원가·부가가치가 중국산 잔탄검 투입량의 상당 부분이 변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상무부는 GPI 제품 각각에서 잔탄검이 생산원가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상세한 자료를 구했으며, 잔탄검 원가가 총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을 확인했다.⁸⁾

(5) 생산공정의 복잡성 비교 평가

상무부는 원료인 잔탄검이 세균 보존, 세균 접종, 여과/원심분리, 증류, 정수 처리, 건조, 제분 및 잠재적 피복 공정을 거치는 다단계 공정인 반면, GPI Purexan 80AN 및 200AN은 특정 단계(혼합 및 스프레이 분사)만을, GPI Quickxan 70은 3단계(비활성화→조건화→재활성화) 공정만을 거친다고 평가하며 원료 생산이 GPI의 최종 제품 생산보다 집약적이고 정교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GPI는 장기간 아밀레이스 효소를 완전히 비활성화하는 공정을 개발하고, 신속 점도 분석기(Rapid Visco Analyzer)를 이용해 피복 처리된 잔탄검의 양을 검사하고 배합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으나, 상무부는 이를 오히려 GPI 공정이 복잡하지 않다는 근거로 해석했다. 특히 GPI가 강조한 ‘신속’·‘저렴’ 등의 특징은 검사가 집약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판단했다.

(6) 투자 수준

상무부는 최종 제품과 원료 잔탄검 제품 간 투자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으므로, 이를 중립적 요소로 처리했다. 특히 상무부는 GPI가 캐나다 시설에 1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고 주장했음에도, 해당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이해관계자인 GPI에 있다고 강조했다.

-
- 7) Notice of Final Determination of Sales at Not Less Than Fair Value: Wax and Wax/Resin Thermal Transfer Ribbon from the Republic of Korea, 69 FR 17645(April 5, 2004), Peer Bearing Company–Changshan v. United States, 128 F. Supp. 1286(CIT 2015)
- 8)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영업비밀로 분류되어 공개되지 않았다.

(7) 필수 성분 및 본질적 특성 부여

GPI는 잔탄검이 자사 제품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필수 원료이지만, 이러한 원료가 최종 제품으로 ‘실질적인 변형’ 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Acetric Health LLC v. United States*, 949 F. 3d 719(Fed. Circ. 2020)⁹⁾와 같은 관련 판례들을 인용했다. GPI에 따르면, 자사의 최종 제품들은 특정 공정을 거쳐 물품의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가 변형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원산지가 중국에서 캐나다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무부는 GPI가 인용한 판례들이 주로 미국 CBP의 판정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며 GPI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원산지 판정 시 주로 19 CFR 134.1을 적용하는 CBP와 달리, 상무부는 별도의 규정인 19 CFR 351.225(j)를 주로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무부는 CBP를 비롯한 다른 기관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고유의 판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또한, 상무부는 GPI가 자사 제품을 “우수한 잔탄 원료 또는 제품”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GPI 자신이 자사 제품의 본질이 여전히 잔탄검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GPI가 제시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7개 판단 요소 전반을 종합한 결과 GPI 제품의 본질적 특성이 여전히 중국산 잔탄검에서 유래한다고 판단했다.

[GPI 잔탄검 범위판정 핵심 쟁점 및 상무부 판단]

구분	GPI의 주장	미국 상무부의 판단
제품 등급/종류	자사 제품은 특정 공정을 거쳐 여러 원료가 혼합된 가공품으로 중국산 잔탄검과는 다른 등급 및 용도를 가지며, 특정 HTSUS 코드(예: 제2106.90.9898호)로 분류되어야 함	원료 잔탄검과 GPI 제품 모두 명령 대상 범위에 기술된 화학적 구조(5당 다당류)에 해당하므로 등급/종류가 동일함. 캐나다 공정은 원재료의 본질적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못함. HS CODE(HTSUS) 분류는 행정적 편의 목적이며 서면 설명이 결정적이므로 GPI의 주장은 영향 없음

9) *Acetric Health LLC v. United States*, 949 F. 3d 719(Fed. Circ. 2020); *Torrington, Co. v. United States*, 764 F. 2d 778(Court of Customs and Patent Appeals 1982); *Gibson-Thomsen Co., Inc. v. United States*, 27 CCPA 267(Court of Customs and Patent Appeals 1940); *Cyber Power Systems, Inc. v. United States*, 622 F. Supp. 3d 1397(CIT 2023),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664 F. Supp. 538(CIT 1987).



구분	GPI의 주장	미국 상무부의 판단
물리적 특성	혼합 및 가공을 통해 물리적 구조와 제품 형태가 달라졌으며, 아밀레이스 효소를 완전히 비활성화하는 공정을 개발했음	화학적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증거 제시 부족. 아밀레이스 비활성화 등 물리적/기능적 변화는 경미한 수준이며, 효소 유무는 범위 문언상 결정 요소가 아님. 명령 문언은 잔단검의 '화학적 구조'를 중심으로 정의되므로 물리적 특징 변화는 중요하지 않음
최종 용도	Purexan 80AN, 200AN, Quickxan 70은 특정 고객의 최종 용도에 맞게 개조된 제품이며 일반 잔단검과 동일하지 않음 - 아울러 초기 ITC 산업 피해 보고서에 자사 제품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명령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해당 제품들은 동일 업종인 식품 및 음료 분야에서 사용되며 잔단검으로 표기되므로 최종 용도 측면에서 잔단검과 다르지 않음. ITC 역시 최종 용도가 동일하다고 판단 상무부는 ITC 보고서에 명시적 언급이 없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ITC가 피해 보고서에서 관련 제품을 광범위하게 검토했으며, GPI 제품의 용도가 ITC가 검토한 '식품 및 음료 등급' 잔단검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대상 제외 주장을 거부함
생산원가 및 부가가치	자사 제품은 고객 맞춤형으로 잔단검 함량이 제품마다 다르므로 평균값 산출은 무의미하며, 생산원가 및 부가가치 비율은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GPI 의견에 동의하지 않음. 최종 제품의 생산원가 및 부가가치가 중국산 잔단검 투입량의 상당 부분을 변형시키지 못함. GPI 제품의 총 원가에서 잔단검 원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함을 확인
생산 공정의 복잡성	'자체 개발한 공정'으로 잔단검의 변형을 주장 - 최종 용도에 따라 배합됨	원료 잔단검 생산은 세균 보존, 여과 등 다단계 공정을 거치는 반면, GPI 공정은 특정 단계(예: 3단계)만을 거치므로 원료 생산이 GPI의 최종 제품 생산보다 더 집약적이고 정교하다고 판단
투자 수준	캐나다 시설에 1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음	최종 제품과 원료 잔단검 제품 간 투자 수준 비교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으므로 중립적 요소로 처리. 해당 주장 입증 책임은 GPI에 있음
본질적 특성 부여	특정 공정을 거쳐 물품의 명칭, 성질, 용도가 변형되어 원산지가 중국에서 캐나다로 변경되었으며, 관련 판례를 인용	GPI가 인용한 판례는 주로 CBP 판정과 관련되며, 상무부는 19 CFR 351.225(j)를 주로 적용함. 상무부는 CBP 등 타 기관 결정에 구속되지 않으며 고유의 판단 기준을 적용. GPI가 자사 제품을 "우수한 잔단 원료 또는 제품"으로 설명하는 것은 본질이 잔단검임을 인정하는 증거라고 강조함



5. 소결

미국 상무부는 GPI가 캐나다에서 자체 개발한 공정을 통해 중국산 잔탄검을 가공하였더라도, 그 공정이 기존 반덤핑 명령의 범위에서 규정한 기준을 벗어날 만큼의 변화를 만들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상무부는 GPI의 공정이 독자 기술개발에 기반하였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해당 공정은 명령문에 기재된 고려 사항이 아니므로 범위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상무부는 GPI가 혼합물 내 잔탄검 함량이 건조중량 기준 15% 미만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명령문이 규정한 적용 기준(피복 여부와 관계없이 잔탄검 15% 이상 포함)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결국 상무부는 GPI 제품이 중국산 잔탄검과 동일한 화학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산으로 간주되어 기존 반덤핑 명령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최종 결정했다.

이번 사례는 상무부가 범위판정에서 공정의 독자성보다 명령문에 규정된 서면 기준과 화학적 동일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6. 맷음말

동 사례는 미국 상무부가 반덤핑 명령의 범위에 대한 서면 설명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의 서면 설명은 범위 해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며, 특히 명령문이 제품의 핵심 성분이나 화학적·구조적 특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서면 기준은 다른 부수적 요소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범위판정을 준비하는 기업은 서면 설명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내용에 맞추어 신청서의 논리를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구성해야 한다. 신청인은 신청서에 기재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으며, 상무부가 판단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투자 규모, 생산공정의 특성, 원가 구조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충분한 증빙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무부는 특정 제품이 기존 명령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때,



반덤핑·상계관세 명령 발효 이전에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작성한 미국 산업 피해 조사보고서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따라서 기업은 관련 ITC 조사자료와 서면 설명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증빙자료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준비해야 범위판정 과정에서 보다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시할 수 있다.

참고문헌

- 19 CFR §351.225 – Scope Rulings
- 19 CFR §351.301 – Time limits for submission of factual information.
- 19 CFR §351.303 – Filing, Document Identification, Format, Translation, Service, and Certification of Documents
- 19 CFR §351.304 Establishing business proprietary treatment of information.
- 19 CFR §351.305 Access to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 19 CFR §351.306 Use of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 범위판정 신청 가이드(Scope Ruling Application Guidance)
- 범위판정 신청서(Scope Ruling Application)
- ACCESS 전자 제출 절차 안내서(ACCESS Handbook On Electronic Filing Procedures (Updated Oct 30, 2023))
- Gum Products International, Inc., Scope Ruling Application for Food Ingredients, Case No. A-570-985, submitted to U.S. Department of Commerce (Sept. 19, 2023) (Public Version)
- U.S. Department of Commerce, "Xanthan Gum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inal Scope Ruling on GPI Food Ingredients," Case A-570-985, Memorandum from Reginald Anadio to Scot Fullerton, Acting Deputy Assistant Secretary for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perations (May 20, 2025)
- ACCESS 홈페이지(<https://access.trade.gov/>)

붙임1 : 미국 상무부 범위판정 주요 내용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제품이 기존 반덤핑(AD)-상계관세(CVD) 명령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미국 상무부가 공식적으로 판단하는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위판정은 (1) 이해당사자(기업 등) 직접 신청 또는 (2) 상무부 우회조사 (circumvention inquiry, §351.226) 진행 중에도 병행/통합 검토 가능(§351.225(d)(2), (i)(1))
법정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근거: 19 CFR 351.2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문서) 범위판정 신청 가이드 및 표준 신청서 공식 게재(홈페이지)
신청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원칙적으로 전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CESS 시스템(※: https://access.trade.gov/) ※ (예외) 500페이지 초과~50MB 초과 파일, ACCESS 장애 등 일부의 경우 직접 제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 불완전 및 번역 누락 시 신청서 반려(서류 보완 후 재제출 가능) • 언어 : 영어(번역문에는 원본 사본 반드시 첨부)
신청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가 접수되면 상무부는 30일 내 검토 및 수리 → 사실관계 검토 → 120일 내 판정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정당한 사유(good cause)”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대 180일까지 연장 가능 → 총 300일 이내에 최종판정¹⁰⁾ • (공표)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범위 내/외’ 결정 공표

10) §351.225(e)(2)

구분	주요 내용						
범위 판정 신청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5개 절 구성(제II~IV절 해당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증빙서류가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I절 : 일반 정보(신청 개요, 첨부 문서 목록, 신청 목적 및 제출 규정 준수 확인 등) 제II절 : 제품 정보(공개 목적용 제품 정보 및 비공개 상세정보(생산이력, 생산량, 제조공정도 등), 마지막으로 해당 명령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근거) 제III절 : 원산지 정보(원산지 판정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 제IV절 : 제품 수입(미국 관세영역 반입 여부 등) 제V절 : 범위판정 신청자(또는 대리인) 정보(신청 자격에 대한 증명 자료 및 관련 사실 기재) 						
최우선 고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위판정) 원칙적으로 기존 반덤핑(AD)-상계관세(CVD) 서면 설명이 우선이며 필요한 경우 1차 및 2차 자료를 추가로 검토할 수 있음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주요 내용</th></tr> </thead> <tbody> <tr> <td>1차 자료</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명령의 초기 조사에 포함된 ▲청원서의 제품 설명, ▲제품 설명, 그리고 ▲상무부의 과거 또는 동시진행 중인 판정 내용(해당 명령 및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면설명을 가진 다른 명령들의 선행 판정 등 포함),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초기 조사 보고서 및 해당 명령 관련 ITC 결정 사항 </td></tr> <tr> <td>2차 자료</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 언급한 자료 이외 상무부 또는 ITC의 결정 사항 및 CBP 판정 </td></tr> </tbody> </table>	구분	주요 내용	1차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명령의 초기 조사에 포함된 ▲청원서의 제품 설명, ▲제품 설명, 그리고 ▲상무부의 과거 또는 동시진행 중인 판정 내용(해당 명령 및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면설명을 가진 다른 명령들의 선행 판정 등 포함),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초기 조사 보고서 및 해당 명령 관련 ITC 결정 사항 	2차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 언급한 자료 이외 상무부 또는 ITC의 결정 사항 및 CBP 판정
구분	주요 내용						
1차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명령의 초기 조사에 포함된 ▲청원서의 제품 설명, ▲제품 설명, 그리고 ▲상무부의 과거 또는 동시진행 중인 판정 내용(해당 명령 및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면설명을 가진 다른 명령들의 선행 판정 등 포함),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초기 조사 보고서 및 해당 명령 관련 ITC 결정 사항 						
2차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 언급한 자료 이외 상무부 또는 ITC의 결정 사항 및 CBP 판정 						
범위 판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면 설명만으로 판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품이 명령의 "범위 내(in-scope)"인지 여부를 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리적 특성(화학적, 치수적, 기술적 특성 포함) 제품의 최종 용도 최종 사용자의 기대 거래 경로 제품이 광고 및 전시되는 방식 <p>※ 이 중 일반적으로 물리적 특성을 다른 요소들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고려함</p>						
원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 범위판정 시 제품의 원산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무부는 실질적 변형 분석(substantial transformation analysis)을 실시할 수 있음(§351.225(j)). ☞ 상무부 AD/CVD 범위를 판단할 때 필요 시 19 CFR 351.225에 근거하여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으며 이때 CBP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 별개로 요건 및 독립적인 권한을 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위판정 시 원산지 판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 완제품이 원재료 제품과 다른 등급 또는 종류의 물품인지 여부 제품의 물리적 특성(화학적, 치수적, 기술적 특성 포함) 최종 완제품의 의도된 최종 용도 제3국에서의 추가 가공으로 인한 생산비용 또는 부가가치 제3국에서의 가공 성격 및 복잡성 수준 제3국에서의 투자 수준 마지막으로 상무부는 원산지 판단 시 제품의 필수 구성요소가 생산된 장소 또는 제품의 본질적 특성이 부여된 장소를 고려할 수 있음 						